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검토 보고서

2023. 11. 28.(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
- 제안일 : 2023. 11. 17.
- 회부일 : 2023. 11. 20. (의안번호 : 23-113)

2. 제안이유

가.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위치 및 주요 기능을 구청장 고시로
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신속한 현행화 도모

나. 불필요한 규정 삭제

3.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 설치 명단 별표 명시에서 구청장 고시로 변경

- 제3조 사회복지시설 설치 명단 별표에서 고시로 변경

(현 행) [별표]와 같다

(개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5조 제3조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용어 처음 등장하여 약칭사용

(현 행)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정안) 구청장은

나. 불필요한 규정 삭제 : 제11조(시행규칙)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3. 7. 13. ~ 8. 2.(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위치 및 주요 기능을 구청장 고시로 정함으로써 사회복지 시설의 신속한 현행화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명단 별표 명시에서 구청장 고시로 변경하고
 - 안 제5조 제3조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약칭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명단’(28개소)은 본 조례의 별표를 통해 공개되고 있으며, 신규시설 설치 등 변동사유가 발생할 때 마다 별표 목록 변경을 위한 비효율적인 조례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 조례 제정(2011년)이후, 별표의 현행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계속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신규시설의 설치, 시설명 및 주소의 변경 등으로 별표 목록 현행화를 위한 반복적인 조례 개정이 예상되어 조례개정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바 지속적으로 변경이 예상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명단’을 구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시설체계 확립 상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주민생활 복지과	신희선 (8810)	이민영 (88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신속한 현행화 도모하기 위해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주민생활복지과 최자윤
연 락 처	02-3153-8832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별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연 번	주관과	시설명	위 치	주요기능
1	주민생활복지과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5 (성산동)	종합복지서 비스제공
2		마포행복나눔 푸드마켓 1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 (성산동)	저소득주민 지원시설
3		마포행복나눔 푸드마켓 2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6길 10 (노고산동))	저소득주민 지원시설
4	아동청소년과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길 14 (합정동)	영유아·가 족 지원
5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우리마포복지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6길 10 (노고산동, 복지관 4,5층)	노인 복지관
6		아현실버복지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길 3 (아현동)	노인 복지관
7		용강노인복지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31길 31 (용강동)	노인 복지관
8		마포노인복지센터 (노인요양)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12길 6-2 (공덕동)	노인요양 시설
9		마포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12길 6-2 (공덕동)	재가노인 복지시설
10		망원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1길 61 (망원동)	재가노인 복지시설
11		아현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6길 19(아현동)	재가노인 복지시설
12		아현실버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일길 3 (아현동, 4층,6층)	재가노인 복지시설
13		우리마포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6길 10 (노고산동, 복지관4,5층)	재가노인 복지시설
14		창전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길 30 (창전동,4층)	재가노인 복지시설
15		한서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80 (망원동, 1층)	재가노인 복지시설

연 번	주관과	시설명	위 치	주요기능
16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상암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42길 2 (상암동, 2층)	재가노인 복지시설
17		초록숲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길 44-81 (아현동, B1층)	재가노인 복지시설
18		마포노인복지센터 부설 마포재가노인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99 (공덕동)	재가노인 복지시설
19		마포 어르신 돌봄통합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48-14 (상수동)	재가노인 복지시설
20		우리마포시니어클럽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8길 58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21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4길 35 (성산동)	장애인지역 사회 재활시설
22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 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 4길 35 (성산동)	장애인지역 사회 재활시설
23		우리마포장애인 주간이용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6길 10 (노고산동)	장애인지역 사회 재활시설
24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상암동)	장애인체육 시설
25		푸르메재단 넥슨어린 이재활병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상암동)	장애인의료 재활시설
26		마포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2층(상암동)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27		우리마포보호작업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6길 10 (노고산동)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28		마포푸르메 직업재활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B2층 (상암동)	장애인직업 재활시설